

<論 說>

## 家畜防疫에 對한 小考 (Ⅱ)

### 金炳星

家畜防疫을 適切하게 實施하기 為하여는 于先 未知의 한 傳染病이 發生되었을 때에 臨床的 細菌學의 或은 化學的 諸検查成績에 依하여 問題되고 있는 疾病을 正確하게 診斷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診斷의 正確性 缺如는 能히 莫大한 人力과 數萬 원乃至 數拾萬원의 國家 또는 個人財產의 浪費를 招來할수있는 것으로 家畜防疫 施策에 있어서의 가장 重要한 先行條件이 되는 것은 물론이겠습니다.

이 病原體를 確定할적에는 可能하면 病原體의 菌型까지 究明하여 놓는 것이 疫學의 系統的 調查上 必要할 것입니다. 이것은 發生의 原因을 調査할때에 또 流行中에 있는 病原體의 菌型과 同一한 菌型 또는 그에 効力を 나타낼수있는 菌型으로 만든豫防藥으로豫防注射를 實施하고자 할때에 必要不可缺한 要素가 되는 것은勿論이겠습니다.

傳染病의 發生原因을 究明하는 調査에 있어서 家畜은 自己의 病을 早期의 으로 自覺하여 이를 表示할수 없기 때문에 結局 痘의 發見은 飼育者나 管理者가 發見할때까지相當한 時日이 지나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임으로 그때에는 이미 他家畜에도 蔓延된 것으로 認定할수 있으며 獸醫師가 現場에 到着하였을때에는 이미 流行의 一段階를 지나 鮑死體 또는 病性鑑定上必要되는 資料를 폐기 또는 任意로 處置하였기 때문에 必要한 可檢物조차 求得하기 어려운 例도 종종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좋은 材料를 蒐集하여 위와같은 診斷의 確定이 必要되는 것입니다.

防疫對策을 為하여는 여러가지 理論과 成績을 詳細히 數學的으로 檢討하게되는데 第一 重要한 計劃樹立의 基礎로되는 資料의 精密度에 關하여 等閑視하고 있거나 않나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러한 問題는 研究調查 技術이 整備되는 대로 早速히 是正되어야 앞으로 防疫技術向上을 期할수 있는 것이라고 生覺되는 것입니다.

家畜傳染病이 發生하였을 때에는 于先 그 發生原因을 究明하여야 그에 適切한 對策을 講究할수 있는데 이 原因究明이 또한 問題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主로 發生되어 家畜에 피해를 주고있는 傳染病에 對하여는 各方面으로 努力은 하고 있으나 아직 問題點이 많이 存在하고 있습니다.

筆者が 언젠가 各道의 傳染病 發生狀況과 그 原因을 調査한바, 發生 件數의 大多數가 原因未詳 또는 不明이었으며 原因이 究明된 件數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데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이와같은 結果를 招來하고 있는 原因은 주로 다음과 같으리라고 生覺됩니다. 即

- 1) 우리나라 is 아직껏 家畜의 移動狀況을 把握할수 있는 行政的措置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며
- 2)豫防注射 實施 標識이 家畜自體에도 實施를 하 고는 있습니다마는 材料費, 人件費等의 不足으로徹底를 期하기 어려운 環境에 놓여있는 點과
- 3)畜主가 傳染病豫防은 他人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為함이라는 道義心을 어느 程度 가지고 있는 가
- 4) 國家의 이에 對한 果敢한 措置如何이라고 보겠읍 니다.

위와같은 結果로 因하여 어느 地方에 어떤 痘이 發生하였다하더라도 이것이 常存하고 있는 土壤菌으로 因한 發生이나 그려치아니하면 外部에서의 家畜其他媒介物의 移動이나 侵入으로 因한 發生인가의 區分조차 判定하기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家畜防疫은 家畜自體가 經濟的 動物이니만큼 그 實施程度에도 嚴然한 限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여러 缺點은 農民所得과 養畜家の 近視眼의 인 利潤을充分이 考慮하여 實施하여야하며 現實을超越한 理想的인 制度만 設置할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또한 過去에는 急性型으로만 發病되던 豚코레라等이 요즘에는 順次 慢性型으로 發生形態가 變異되어가고 있는 等 病原體와 宿主間의 相互關係의 變化等으로 病原體側에 變異나 毒力의 變化가 일어나고 그와 同時에 宿主인 動物에도 여러가지 變化가 일어나게되어 病性鑑定上 더욱 混亂을 일으키게 되는 例도 많은 것

으로 生覺됩니다.

이러한 모든 惡條件를 克服하는 方法으로서는 全國 各市 郡에 配置되어 있는 家畜防疫官의 活躍과 또한 畜主들의 家畜防疫官에 對한 協助와 家畜衛生에 關한 認識의 向上이 그 關鍵이 되겠습니다.

一線防疫 담당官의 말에 依하면 傳染病防疫次 現場에 出張하여 畜主로부터 既往症 其他 여의가지 調查上 必要한 參考資料를 蒐集할때에 一部 畜主의 이에 對한 協助가 不足하여 任務遂行에 큰 애로가 있는 例도 있다합니다.

以上 말씀드린 여러 問題를 解決하기 為하여 各市道 振興院 拿下에 道立家畜保健所가 設置되어 이 機構로 하여금 그 道內의 痘性鑑定 調查試驗을 遂行케 하고 있으며 國家는 이 機構에 每年 定期的으로相當額에 達하는 國費를 事業用으로 補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家畜防疫施策이 앞으로 얼마만큼 發展되고 또 所期의 目的을 充分히 達成할수 있는가는 단지 이 家畜保健所를 如何히 育成成長케 하느냐에 달려 있다하더라도 過言이 아닙니다.

時時로 複雜하게 變化되는 技術과 從來에는 取扱한 經驗이 없는 새로운 傳染病이 輸入된 家畜으로 말미암아 發生되는 境遇 이러한 痘에 對한 早期의 發見 및 그의 措置에 關한 疫學의 面의 建議를 自信있게 行使할수 있는 實力을 가지고 있어야 할 處地에 놓인 이 家畜保健所의 育成은 앞으로 重點으로 含蓄性있게 實施되어야 할 것이며 隣接地方에 있는 獸醫科系統의 教授와 緊密한 協助를 하는 것도 좋은 方法의 하나입니다.

i) 點에 關하여는 筆者は 可能하면 適當한 機會에 各市道의 家畜保健所 位置를 農科大學이나 獸醫科大學과 同一構域內에 位置케 하여 學生實習에도 도움을 주고相互隨時 協助하는 便宜을 가질수 있도록 되기를 希望하고 있습니다.

現在 各道 家畜保健所는 制限된 人員과 經費로서 各種 痘性鑑定 地方病 調查, 養畜家の 指導訓練, 防疫事業의 一部인 離白痢症, 乳牛 및 乳山羊의 부루세라症 및 結核, 鷄의 白血病等의 檢索을 實施하고 있으며 그 設置數는 各道에 1個所式 9個所와 서울特別市에 이와 同一한 事業을 管掌하는 家畜衛生試驗所가 1個所 設置되어 있으며 釜山市에 도 現在 그 設置問題를 考慮하고 있는 中으로서 家畜衛生面의 完全體系化를 積極 圖謀하고 있는 것입니다.

傳染病이 發生하였을때는 그 痘性鑑定 및 原因等을 研究한 다음의 問題로 그 痘에 適切한 防疫 對策을 如何히 樹立할 것인가가 最終의 問題가 될 것입니다.

이 防疫實施에 關하여 考察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防疫措置로서는 家畜의 移動禁止, 交通遮斷, 隔離, 殺處分, 豫防注射實施, 폐獸 處理의 徹底, 輸出入動物의 檢疫, 消毒實施等 여의方法이 있겠습니다마는 今回에는 이 中에서 몇가지만 簡單히 論議하여 불가生覺합니다.

첫째로 消毒에 關한 問題입니다.

이 消毒實施에 있어서는 그 施術에 있어서 稀釋率 및 使用時의 溫度 効力의 有無를 格別히 檢討한다는 것은 極히 常識의 問題라고 生覺됩니다마는 이는 여러 條件으로 말미암아 잘 알고 있으면서도 形式的인 消毒에 그치게 되기 쉬울 것입니다.

특히 僅少한 經費로서 野外에서 實施할때에는 더욱 이의 可能性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러한 不徹底한 消毒은 않하느니보다 오히려 惡效果를 招來하게 되는 原因이 될 것입니다.

筆者가 地方에 出張을 갔을때 不潔한 環境下에 飼育되고 있는 家畜이 아직껏 許多히 남아있다하여도 過言이 아닌 우리나라 養畜實情에 있어서 特히 副業用으로 1~2頭式 飼育하고 있는 農家の 豚舍나 또는 鷄舍를 볼때에는 우선 그 畜舍를 豫防의 目的으로 消毒을 實施하기 前에 淨掃를 徹底히 하여야되겠구나하는 感이 날 程度로 舊舍가 不潔함을 느낄때가 있읍니다. 그 理由는 消毒의 前提는 于先 淸掃이기 때문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消毒劑를 使用하여 適切한 方法으로 消毒을 實施하였다 하더라도 원래 畜舍나 消毒目的物이 不潔하면 그 目的을 이룰수 없기 때문이겠습니다. 特히 傳染病 發生地의 土壤이나 粪尿통, 飼料통 傳染病으로 因한 폐사體의 遷搬 이에 接觸한 사람 其他容器 器物等의 消毒는 더욱 綿密한 注意下에合理的인 消毒를 實施하여 하겠다는 點을 재차 想起하는 바입니다.

政府는 이와같은 重要性에 따라서 家畜傳染病豫防法施行規則에 消毒方法 基準을 制定하여 消毒實施要領을 法으로 規定함으로서 消毒實施의 徹底를 期하도록 措置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基準에 依한 消毒藥과 그 實施方法을 使用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消毒은 所期의 効果

를 거둔것으로 認定을 하지아니하고 있읍니다.

둘째로 家畜防疫上의 隔離措置에 關하여 考察할때  
에 隔離된 家畜에 對한 管理를 加一層 嚴格히 實施하  
여야할 것으로 生覺됩니다. 發病中에 있는 陽性家畜  
의 隔離도 重要할뿐더러 保菌家畜의 早期索出과 이의  
隔離에도 特히 意義가 크다고 보겠읍니다.

이 保菌家畜은 現在 症勢가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  
서도 病菌을 恒常 排出하고 있는데 그 量은 적다하되  
라도 자칫하면 이 家畜은 健康牛家畜과 같이 各處로  
移動하며 또 이 家畜에 對하여 警戒도 아니하므로 病  
原體를 꾸준히 傳染시킬 憂慮가 있는 家畜으로서 傳  
染病의 傳染源으로서의 意義는 오히려 發病中인 患畜  
보다도 더 크다고 生覺되겠읍니다. 이러한 뜻에서 症  
勢가 激烈하지 아니한 慢性傳染病 및 保菌家畜의 早  
期索出과 徹底한 隔離面에 關하여는 앞으로도 繼續  
重要視된 問題이라고 生覺됩니다.

셋째로 우리나라가 現在 實施하고 있는 豫防注射에  
關하여는 우리나라를 過去 獸醫界의 諸先輩任들의 成  
功的인 活躍으로 豫防注射 分野에 關하여는相當한  
發展을 이루하였다 하더라도 過譽이 아니겠읍니다.

海外를 다녀오신 여러분의 高見에 依하여도 東南亞  
나 其他 國家에 比하여 우리나라의 豫防注射에 關한  
技術은相當한 水準에 到達되고 있다고 確信하는 바입  
니다.

既往에 軌道에 놓인 이 豫防注射 實施 事業은 앞으  
로도 繼續 그 秀位性을 確保하도록 努力하여야 할 것  
이며 이를 爲하여는 여러가지 問題點이 있겠읍니다마  
는 그 中의 한가지로서 效果判定의 指標를 確實하게  
決定하여 그 豫防注射藥이 다음 事項의 어느 것에 適  
用되느냐를 檢討하여야 할 것입니다.

#### 即 그 效果가

1) 感染豫防, 2) 發病豫防, 3) 重症化豫防, 4) 폐  
사豫防, 5) 免疫抗體의 造成, 6) 潛伏期의 短縮, 7)  
流行 또는 傳播防止 等中 어느 것에 屬하는 것인가를  
잘 認識하여 使用하도록 함이 重要할 것입니다.

豫防藥 保存用 冷藏庫等의 施設이나 여러 與件이  
充分히 具備되지 못한 實情下에 있어서의豫防藥의  
適切한 保管 問題에 關하여도 當部는 各市郡에 配置  
되어 있는 家畜防疫官으로 하여금 井戶, 地下室, 其  
他 선선한 冷暗所에 自進保管도록隨時로 監視하고  
있읍니다. 家畜防疫에 使用되고 있는 農村振興廳 家  
畜衛生研究所 製品 및 許可된 民間製造豫防藥도勿  
論 慎重한 國家檢定을 單한 것으로서 그 自體効力의

絕對性은 認定한다 하더라도 家畜防疫의 行政的 效果  
判定에 있어서는豫防藥에 關한 檢討와 더불어 그 發  
病病原體自體에 對한 生態學的面도 併行하여 考慮하  
여야 비로소豫防藥을 有効適切하게 家畜防疫에 利用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또는 어느 程度의 效果를 거두었  
는가를 最終의 判定할 수 있겠읍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一頭의 豚이 病을 앓다가 아무  
런 治療措置를 아니하였을 때에는 自然治癒되는 例가  
許多한 것과 마찬가지로 家畜群에 集團으로 大發生  
이 있는데 對하여 이에 對한 아무런 人工的인 對策이  
없어도 自然現象으로서 終熄되는거와 같이 표연히 發  
病하였다가 표연히 사라지는 例도 적지 않으며 또 이  
에 反하여 어떤 傳染病은 明白한 人工的 防疫 對策  
으로 因하여 消滅되는 例도 있읍니다.

이러한 例를 가지고 考察할 때에 假令 現在 發生中  
에 있는 傳染病이 順次 終熄傾向으로 變動되고 있을  
境遇에 이것이 自然現象으로서 終熄되고 있는 것인가  
그려치 않으면 人工的豫防注射等을 實施한 結果로서  
그 効力으로 因하여 消滅되고 있는가의 判定에는 極  
히 慎重을 期하여야 할 問題이겠읍니다.

이것은 現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世界 어느 나라  
일지라도 自己가 實施하고 있는 現行豫防注射 對策에  
對하여 過大 또는 過小 評價를 하지 않고 正確한 評  
價를 하기에는相當히 어렵고도 또한 重要한 効力判  
定時의 骨子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와 같은 點을 評價하려면 獸醫疫學 全分野의 技  
術이 全面적으로 動員되어 完明하지 않으면 안될 것  
입니다.

以外에도 畜主는 自己負擔으로 自己家畜에 對하여  
豫防注射等 防疫을 實施함이 原則이나 實情上 國家  
가 緊急한 것은 하나로부터 열까지 國費로서 公務員  
으로 하여금 無償으로 注射를 實施하고 있는 實情에  
關하여 充分히 認識하고 계실 것으로 있읍니다마는  
이로 因하여 좋은 效果를 보고 있는 反面에 이와 같은  
制度로 因한 各種 폐斷도 많이 있으므로 이에 對한 앞  
으로의 根本的 施策方針도 充分考慮中에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폐獸檢案에 關한 것으로 이 問題에 關하여는  
前부터 여러번 檢討는 하여 왔으나健全한 폐獸處  
理를 實施하려면 想像外로 莫大한豫算이 必要됨으  
로 現在는 폐獸檢案에 關하여는 國內 全技術과 行政  
力만을 重點으로 動員하여 그에 徹底를 期하고 있  
읍니다.

然이나 그 檢案後의 處理에 있어서는 消却 또는 埋却費가 평장히 所要됨으로 이黠에 運營에 큰 애로가 있는 것으로서 이 問題에 關하여는 養畜家諸位의 積極的인 協助가 必要되고 있으며 適宜한 時期에 劇期의 인 措置를 取하도록 努力하여야 할것입니다.

다섯째로 輸出入動物 및 農產物檢疫에 關하여 簡單히 考察하여 볼까 生覺합니다.

이 檢疫은 檢疫實施의 目的이나 그에 따르는 要領에 依하여 輸出檢疫과 輸入檢疫으로 크게 둘로 나누어서 生覺하여야 하겠습니다.

#### 그 하나인 輸出檢疫의 目的是

- 1) 海外 各國의 要請에 依하여 그 나라의 檢疫要求條件을 充足시키기 為함이며
- 2) 輸出國의 海外市場에서의 信用維持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輸入檢疫의 目的是 外國으로부터의 家畜傳染病의 國內侵入 防止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政府는 이 動物檢疫을 實施하기 為하여 釜山 松島에 國立動物檢疫所를 서울特別市 楊平洞에 同서울支所를 設置하여 釜山의 本所는 水營 飛行場과 釜山港을 經由輸出入되는 檢疫物을 서울支所는 金浦 國際空港 및 仁川港을 經由輸出入되는 檢疫物의 檢疫을 각各 實施하고 있습니다.

檢疫物이라 함은 家畜傳染病豫防法施行規則 第20條에 規定되어 있는 것으로서 偶蹄類의 動物, 犬, 猫, 원숭이, 家畜, 鳥類, 寵, 蜜蜂, 其他 特種野生動物 및 그의 骨肉 卵, 皮, 毛, 羽, 角, 蹄, 腱, 臟, 器, 生乳, 血粉 및 精液 및 그 容器 또는 包裝, 器具 其他 이에 準하는 物品을 가르키는 것입니다.

또 家畜傳染病豫防法 第20條로서 家畜의 傳染性疾病의 病原體는 農林部長官의 許可를 받았을 境遇에 限하여 輸入할 수 있으며 農林部告示 408號에 依한 家畜의 輸入이 禁止된 地域으로부터는 禁止된 特種品目의 國內輸入을 禁하고 있는 것입니다.

輸入檢疫의 實施過程은 檢疫物을 塔載한 船舶및 航空機가 港口에 到着된 때부터 船上檢疫부터 始作되어 所定의 檢疫期間을 通하여 檢疫對象傳染病의 檢查를 畢한 後 檢疫所長이 發行한 所定의 檢疫을 執한 結果 傳染病의 傳播의 憂慮가 없다는 内容의 證書를 交付받을 때까지를 檢疫中으로 認定하고 있으며 輸出檢疫의 境遇에는 檢疫이 始作된 後부터 檢疫物이 塔載된 船舶 또는 航空機가 出港할 때까지를 檢疫過程으로 간주하여 所定의 檢疫을 實施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檢疫을 받고자 하는 者는 申請時에 所定의 檢疫手數料를 國庫에 納付하도록 規定되어 있습니다.

이 檢疫業務를 國滑司 遂行하기 為하여는 恒常 國際間의 家畜傳染病 發生狀況을 熟知하고 있어 그때 그 때에 그 境遇에 相當한 措置를 取할수 있는 態勢를 加추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事業의 뒷 난점으로서 우리나라에는 香港, 美國, 日本, 泰國, 臺灣, F.A.O. 家畜衛生部長 및 佛國巴里에 事務室을 가진 國際獸疫事務局(O.I.E) 으로부터 每月 그나마 및 世界 各國의 發生月報集計表를 接受하고 있습니다.

이를 代身하여 우리나라에는 日本 農林省 農產局長 美國農務省家畜防疫課長 및 圖書館長, 琉球政府, 臺灣, 香港, O.I.E 泰國 및 F A O의 家畜衛生部長 또는 獸醫當局者에게 發生月報를 定期的으로 送付하고 있습니다.

動物檢疫은 動物의 輸出入量이 增加되고 있는 우리나라 實情으로보아 더욱 그 重要性과 檢疫擔當官의 責任이 무거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檢疫官은 國內 家畜衛生에 關한 水準과는 別途로 外國의 그것에 關한 水準도 充分히 納得하고 있으면서 外國商社가 提呈하는 檢疫要求條件을 充足시키고 그 사람이 頗하는 日를 充分理解할수 있는 넓은 經驗과 學識을 兼備하여야 될 것입니다. 檢疫上 가장 警戒되고 있는 傳染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于先牛疫, 牛肺疫 口蹄疫이 第一 重要視하고 있습니다.

이 病이 國내에 發生만되면 우리나라와 國際獸疫事務局과의 協定內容에 따라 即刻 該機關에 電信으로 그 發生狀況을 通報하여야하며 이 通報를 받은 國際獸疫事務局當局은 이를 即世界 加盟諸國에 電報로 通報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偶蹄類 家畜 및 同畜產物인 豚毛, 毛皮 等을 輸入하고 있는 국가는 即刻의 으로 輸入을 中止할 것은 明白한事實이라고 認定하여야 하겠습니다. 뿐만아니라 인접國家에 被害를 Deal어주기 為하여 日本, 臺灣等의 國家에는 即刻 이려한 事實을 通告하여야 할 道義의義務를 履行하여야 하기 때문에 自然 우리나라 農產物의 輸出事業은 不振될뿐 더러 衛生을 重要視하는 이에 우리나라의 對外의 威信과 信用을 損失하게 될 것입니다.

現檢疫所의 能率面을 考察할때에 老練한 行政家 및 家畜細菌學에 經驗이 豐富하며 技術을 習得한 優秀者 <80면에 계속>